(건축-004) 건축물 철거공사현장 붕괴사고

공사명	○&○ 오피스텔 신축공사			
사고일시	2017년 8월 16일(수) 14:24분경		기상상태	흐림
소재지	서울시 용산구	사고 종류	무너짐(붕괴·도괴)	
구조물 손실	슬래브 및 보	인적피해	-	
장비 손실	-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),	해당없음(〇)

가. 사고개요

1) 공사개요

○ 용도: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

• 연면적 : 776m²

규모: 지하 1층/지상 6층 공사기간: 2017.7~2017.8

2) 사고경위

○ 지상 4층~지상 6층까지 철거완료 후 지상 3층 철거작업을 실시하던 중 지붕슬래브 및 보가 붕괴되면서 이를 받치고 있던 기둥이 전도되어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외줄비계를 파손시키고, 이어서 파손된 외줄비계가 인근건물의 담장을 파손시키면서 인근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 및 담장이 파손됨.

3) 사고원인

- 지상 3층 지붕슬래브 및 보 철거 시에 백호우(0.8㎡)작업자가 우측으로 힘을 가하면서 국부적 으로 과다한 편심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
- 잔재물 반출구가 지상 3층 지붕슬래브 및 보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상 4층 철거 후 잔재물을 지상 3층으로 반출하던 과정에서 보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

나. 재발방지대책

- 구조물 해체공사 전 설계 도면, 구조 계산서, 시방서, 공사비 내역서,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건축물의 해체공사 계획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, 주변의 환경조건,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상황,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, 경제성, 안전성,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하고,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중·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확인한 후 건물의 규모, 구조, 특징 등을 고려한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이 적정하게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.







